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소 데이터 이용보장 의무화 등 〉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10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최소 데이터 이용보장 의무화	2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영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최소 데이터 이용보장 의무화

이용자가 사용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¹⁾가 고령자·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이용요금의 부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지원 능력이 부족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최소 데이터 이용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2(기본 데이터 이용 보장)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령자·청소년 등 대통령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	개정안
	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받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²⁾에 따르면,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요금제를 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받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이용약관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³⁾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남.

○ 현행법에 따르면, 이용약관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에 기간통신사업자가 고령자·청소년 등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약정 데이터의 소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일정 속도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동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청소년 등이 이동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를 보장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정보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약, 물품 구매 등도 대부분 인터넷, 앱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사회보험제도 등 기초적인 복지제도도 ‘정부24’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앱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제도의 혜택 대상이 되는 고령자·청소년 등에게 최소한의 데이터 활용권이 보장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는 알뜰폰 사업자(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도 존재하고 있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최소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데이터 이용보장 의무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의 제29조제2항의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임.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⁴⁾

4)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29.>

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에 따라서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 따라 고령자·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 데이터를 보장하도록 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함.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⁵⁾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유 경쟁이 아닌 법률상 의무로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혜택 제고라는 법안의 제안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데이터 소진 후 추가 과금 없이 일정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 가능토록 이동통신사업자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5)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속도제어(QoS⁶⁾)는 이동통신 상품의 주요 차별화 요소로써 요금제 설계 시 함께 고려되며, 최근 출시된 대부분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400kbps, 1Mbps, 3Mbps, 5Mbps 등 속도제어를 차등하여 제공 중이며, QoS를 유료 부가서비스로 판매 중인 경우도 있어, 동 개정안이 이동통신사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 3사⁷⁾는 현행 요금제가 대부분 속도제어(QoS)를 보장하고 있으며, 보편적 의무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규제와 중복성이 있고,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적의무 부과로 시장 경쟁 위축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임(참고3 참조).
- 종합적으로 보면, 고령자·청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를 보장할 필요성도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업활동 자유 침해나 시행 중인 규제와 중복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어, 이러한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6) Quality of Service

7) SKT, KT, LGU+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 1 이동통신 3사 청소년 및 고령자 요금제 비교

[SKT]

대상	5G 요금제			LTE 요금제		
	월정액	제공량	비고	월정액	제공량	비고
만 12세 이하	26,000원	3GB+400Kbps	5G ZEM 플렌	26,000원	3GB+400Kbps	ZEM 플렌
	36,000원	6GB+1Mbps				
만 18세 이하	45,000원	9GB+1Mbps	0틴 5G	33,000원	2.5GB+400Kbps	0틴 플렌
				45,000원	6GB+400Kbps	
				59,000원	12GB+1Mbps	
				69,000원	100GB+5Mbps	
만 65세 이상	45,000원	10GB+1Mbps	5G 시니어	43,000원	2.8GB+400Kbps	T플렌 시니어
				50,000원	4.5GB+1Mbps	
				69,000원	110GB+5Mbps	
				79,000원	160GB+5Mbps	
만 70세 이상	44,000원	9GB+1Mbps	5G 시니어	-		
만 80세 이상	42,000원	8GB+1Mbps	5G 시니어	-		

[KT]

대상	5G 요금제			LTE 요금제		
	월정액	제공량	비고	월정액	제공량	비고
만 12세 이하	28,000원	3GB+400Kbps	5G 주니어	19,800원	900MB+400Kbps	Y주니어
	38,000원	5GB+1Mbps		24,000원	1.5GB+400Kbps	
				28,000원	3GB+400Kbps	LTE 주니어
만 18세 이하	47,000원	10GB+1Mbps	5G Y틴	33,000원	2.5GB+400Kbps	LTE Y틴
만 65세 이상	44,000원	10GB+1Mbps	5G 시니어	49,000원	6GB+1Mbps	데이터 ON 시니어
	49,000원	15GB+1Mbps				
만 75세 이상	42,000원	9GB+1Mbps	5G 시니어	-		
만 80세 이상	41,000원	8GB+1Mbps	5G 시니어	-		

[LGU+]

대상	5G 요금제			LTE 요금제		
	월정액	제공량	비고	월정액	제공량	비고
만 12세 이하	29,000원	3.3GB+400Kbps	5G 키즈	22,000원	700MB+400Kbps	LTE 키즈
	39,000원	5.5GB+1Mbps		29,000원	3.3GB+400Kbps	
	45,000원	9GB+1Mbps		39,000원	5.5GB+1Mbps	
만 18세 이하	47,000원	8GB+1Mbps	5G 라이트 청소년	33,000원	2GB+400Kbps	걱정 없는 데이터
				49,000원	6GB+1Mbps	
				59,000원	9GB+1Mbps	
				69,000원	매일 5GB+5Mbps	
만 65세 이상	45,000원	10GB+1Mbps	5G 시니어	49,000원	5GB+1Mbps	걱정 없는 데이터
				69,000원	매일 5GB+5Mbps	
만 70세 이상	43,000원	10GB+1Mbps	5G 시니어			
만 80세 이상	39,000원	10GB+1Mbps	5G 시니어			

참고 2 해외 주요국 취약계층 요금감면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2025. 6.)

□ 해외 주요국의 요금감면 규모

국가		한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요금감면 서비스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중 택1	유선전화	유선전화
요금감면 대상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상이군인	저소득층	저소득층, 장애인, 상이군인
감면 자수		776만 명 ('23)	739만 명 ('20)	3.3만 명 ('17)	5.6만 명 ('18)
인구수		5,133만 명 ('23)	33,144만 명 ('20)	4,659만 명 ('17)	6,716만 명 ('18)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15.1%	2.2%	0.07%	0.08%
감면 금액 부담자		사업자 자체 부담	보편적 의무 기금*	보편적 의무 기금	보편적 의무 기금
감면 금액	자국 화폐	12,604억원 ('23년)	\$854m ('20년)	£9.8m ('20년)	€4.6m ('18년)
	KR	1조 2,604억 원	1조 1,267억 원	142억 원	66.4억 원

※ 미국의 경우 보편적 의무 기금 조성을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 과금을 하고 있음

참고 3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 3사 의견

통신사	의견
SKT	○ 법안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사업자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모든 5G 요금제 및 대부분의 LTE 요금제가 기본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QoS 조건으로 데이터를 지속 이용 가능 - QoS 조건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안심옵션 상품을 통해 지속 이용 가능 ○ 통신사는 보편적 역무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을 통해 통신 복지를 지원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통신 3사 연간 1.3조 규모) ○ 법안 도입에 따른 자원 부담 주체, 적정 제공 속도 수준 설정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최저 속도 보장을 규제로 시행하는 해외 국가가 없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KT	○ 모든 5G 요금제에 속도제어(QoS) 적용하여 데이터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사는 취약계층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음 - 고령자·청소년 대상으로 일반인 대비 혜택이 좋은 요금제를 제공중* * 만 34세 이하 데이터 제공량 2배, 어르신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약 50% 추가 등 ○ 시장 요금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사의 의무 강화에 반대함 -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통신시장의 자율적 요금경쟁을 저해하며, 과도한 의무로 수익성 하락 시 신규 투자 및 미래기술 도입 지연 우려가 있음 -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기초*를 보임 * 일본 '05년, 영국 '06년, 프랑스 '07년 등 해외 주요국 요금규제 폐지 등
LGU+	○ 모든 5G 요금제는 속도제한을 적용하여 데이터 지속 이용이 가능하고, 고령자/청년/청소년/키즈 대상 전용요금제 운영 중 - 요금제 설계 시 제한 속도는 요금제 간 차별화 포인트로, 정부가 정하는 속도로 제공 시 요금제 차별화와 시장 내 경쟁 유인이 사라질 수 있음 ○ 통신사는 취약계층 보편적 통신 이용을 위해 연 1.3조 요금감면 중인 바, 기본 데이터 이용은 이미 보장되고 있어 발의안에 반대함 - 보편적 역무 제공(복지감면)과 중복되는 과도한 공적 의무부과에 해당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자 혜택 제공은 신중할 필요 * 고령자 비중은 '24년 23.8% → '29년 30.1% → '37년 40.5%로 증가 예상(통계청)